

국민 손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뽑는다... 선도기업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공개 진행
총 1064곳 중 최종 80곳 최종 후보
5년간 30개 사업, 최대 182억 지원



정부가 기술 독립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최종 평가를 거쳐 뽑힌 강소기업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평가를 5일 대국민 공개 행사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다.

앞서 중기부는 관련 사업에 신청한 1064개 기업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300곳을 추렸다.

아울러 2주간의 외부 전문가 현장평가와 기술 평가를 거치고,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80개 기업이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권위자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회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선정심의회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부처 등 45개 기관에서 총 208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32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 투자심사역 등 사업화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진행되는 최종 평가에선 후보 강소기업의 공개 발표와 선정심의회위원의 질의가 이어진다.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1·2분야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실시된다.

평가에는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케미칼 등 수요 대기업들도 참여하며, 대국민 공개 행사인 만큼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평가에 현장 기술 전문가, 연구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배심원단’을 참여시켜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배심원단은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배심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의견은 선정심의회위원회에 제출돼 평가에 활용한다.

최종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

는 경우 나머지 기업은 내년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심층평가위원장인 윤석진 KIST 부원장은 “심층평가 대상인 300개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이 많아 후보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강소기업은 올해 첫 선정인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선정되는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과 대표 브랜드 투표에도 많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세계 3대’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

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세계 3대 증권박물관 규모의 부산 증권박물관을 개관했다. <관련기사 5면> /예탁결제원

“퀄컴 과징금 1.3조 적법”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정당

세계적인 통신집계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약)는 4일 오전 10시30분 퀄컴 본사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기타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프랜드 확약 회피(경쟁 제한성 인정) 여부 ▲포괄적 라이선스로 인한 휴대폰 제조사 불이익 강제(크로스그랜트 조건) 위법 여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퀄컴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무상 크로스그랜트(royalty-free cross-grant)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퀄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준필수특허(SEP) 사용자는 지역적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혔다”며 “모범집계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점유율, 전체 모범집계 매출액 중 비중,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SEP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 확약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른바 ‘자발적 요청’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취(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판매처 제한 조건, 영업정보 보고 조건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당성 경쟁 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크로스그랜트 조건 자체가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손현경 기자 son89@

정부 3000억 펀드 조성, 핀테크 투자 마중물로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해외진출 지원, 고도화 등 8개 분야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을 붓는다. 진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일정 기간 임시로 서비스 공급을 허락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제도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에 맞는 자금조달 체계와 제도를 마련해 핀테크가 혁신금융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제도·인프라·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핀테크스케일업 추진전략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금융 규율체계 ▲디지털 금융 혁신기반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장에서 ‘상환면제’

교육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확충 ▲핀테크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고도화 등 8개 분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68건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아이디어 보호·부가조건·인수합병(M&A)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테스트 보안점검 공간 등을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한다.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체계도 마련한다.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효용성과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규제 정비를 개선한다.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적용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샌드박스 종료시까지 영업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와 연장 타당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로, 주기적 심사를 거쳐 지위가 갱신된다. 연장기간은 법령 개정시까지 적용된다.

핀테크 기업에 맞는 임시허가도 부여한다. 테스트가 종료돼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법령 개정시까지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으로 인가를 부여해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다.

금융위는 원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신용정보법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 - 상속비용) 한도 안에도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채무액 전액이 면제된다.

/한용수 기자 hys@